

발송일자: 2016.01.29

문서번호: Retail2016-M6

수 신: 수신처 참조

참 조: 수익증권 담당부서장

제 목: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에 따른 공시 관련 대상 펀드 송부의 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당사는 첨부된 펀드에 대해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223조의 “설정 후 1년이 경과하고,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”에 해당하여 소규모 펀드 임의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시공시 사항을 통보합니다.

3. 금융투자협회 소규모펀드 공시시스템 변경(2015.07.30)에 따른 공시방법 변경으로 2015.09.03이후 월말 최초 1회 공시 후, 신규발생 및 변동사유*가 있을 때만 매월 말 추가 공시를 실시하나, 해당 건은 금일 신문공고 사항이므로 당일 공시를 실시합니다.
(*변동사유: 펀드 해지(상환), 원본액 50억원 초과)

가. 발생일: 2016.01.29(금)

나. 해지일: 2016.02.26(금)
(청산일)

다. 펀 드: 첨부내용 참조(판매사별 대상펀드 확인)

첨 부: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대상 리스트 1부. 끝.

하이자산운용주식회사
마케팅본부장



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◆ 소규모펀드 (1년,1개월)여부 공시

번호	운용사 코드	펀드명	발생일	비고
		해당사항 없음		

※ 투자신탁의 경우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주) 소규모펀드(1년)여부 공시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3조제3항제4호에 해당
 소규모펀드(1개월)여부 공시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3조제3항제5호에 해당

◆ 처리방안결정사실(방법)

번호	운용사 코드	펀드명	해소사유	발생일	처리방안 시행예정일	판매사
1	AD032	하이 파워 아시아 증권 투자신탁 1호[주식-재간접형]	임의해지	2016-01-29	2016-02-26	KEB하나은행, 대우증권, 신한금융투자, 펀드온라인코리아
	AD037	하이 파워 아시아 증권 투자신탁 1호[주식-재간접형] 종류 A	임의해지	2016-01-29	2016-02-26	
2	AD086	하이 카멜레온 배당 30 증권 투자신탁 1호[채권혼합]	임의해지	2016-01-29	2016-02-26	HMC투자증권, 광주은행, 교보증권, 대우증권
	AD095	하이 카멜레온 배당 30 증권 투자신탁 1호[채권혼합] 종류 C	임의해지	2016-01-29	2016-02-26	
3	AD074	하이 지주회사 플러스 30 증권 투자신탁 1호[채권혼합]	임의해지	2016-01-29	2016-02-26	BNK투자증권,HMC투자증권, IBK투자증권,KTB투자증권, LG투자증권,NH투자증권, SK증권,경남은행,대신증권, 대우증권,동부증권, 미래에셋증권,메리츠증권, 삼성증권,신영증권, 하나금융투자,현대증권
	AD075	하이 지주회사 플러스 30 증권 투자신탁 1호[채권혼합] 종류 A	임의해지	2016-01-29	2016-02-26	
	AD076	하이 지주회사 플러스 30 증권 투자신탁 1호[채권혼합] 종류 C	임의해지	2016-01-29	2016-02-26	

※ 처리방안결정사실(방법) 공시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